부동산공시법	오늘의 자가진단 지문	교수: 박정환
		과정: 기본이론(7주차)

- 1.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, 그 토지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(0, X)
- 2. 존재하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,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.(0, X)
- 3.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. (0, X)
- 4.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.(0, X)
- 5.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빠진부분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,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.(0, X)
- 6.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.(O, X)
- 7.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그 등기가 "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"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.(O, X)
- 8.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,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.(O, X)
- 9.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 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.(O, X)
- 10.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.(O, X)
- 11.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.(O, X)
- 12. 소유권처분제한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.(O, X)
- 13.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환매특약등기나 권리소멸약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.(O, X)
- 14.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.(O, X)
- 15.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(O, X)
- 16.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,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.(O, X)
- 17. 미등기토지는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(O, X)
- 18.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(O, X)
- 19. 甲과 \angle 이 건물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甲이 甲ㆍ \angle 전원의 지분을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다.(O, X)
- 20.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(O, X)
- 21.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.(O, X)
- [정답] 1.X 2.X 3.O 4.O 5.O 6.X 7.X 8.X 9.O 10.O 11.X 12.X 13.O 14.X 15.X 16.X 17.X 18.X 19.X 20.X 21.X